

농림수산 분야 행정제도개선 추진상황

김 달 중 / 농림수산부
행정관리 담당관

본고는 농림수산 분야 행정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농림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 김달중씨가 쓴 내용중 임업 관련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전부를 게재하지 못함을 필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 편집인

I. 신경제와 행정제도개선

신경제란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경제, 땀흘린 만큼의 결실이 있고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경제,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뛰는 경제를 의미한다.

정부가 7월 2일에 확정·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를 축으로 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제운용 방식이 가져온 부작용과 그 발전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반해서 나온 경제전쟁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우리의 경제성장도 내면을 들여다 보면 지나치게 정부주도하에서 외형적인 것

에 집착해서 이루어진 나머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든가 부문·지역간 균형발전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꾸준히 증가해온 정부의 시장개입의 결과 오히려 경제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효율은 저하되면서 경제구조의 부실과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새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과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세우고, 이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며 이럴때 비로소 국민은 신바람나는 경제활동에 전

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절차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경제적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 내지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도개선(행정규제개혁)은 자연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행정규제개혁을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 중의 4대 중점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5년동안 전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새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농림수산 행정제도개선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주요 내용을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II. 농림수산 행정제도개선의 기본목표와 추진상황

농림수산부에서는 신농정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목표 아래 농림수산분야의 행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농어민의 생산·유통·가공활동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그 절차를 간소화 한다.

둘째, 농림수산업의 구조 개선사업 기반 확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농림수산 관련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품질향상과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시

장경제 아래서 농업의 자생력을 함양한다.

넷째, 농림수산 자원의 필요보존 범위 내에서 타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관련 단체 및 생산자 등으로부터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불만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개별규제가 제정되었던 당시의 목적과 근거를 현재의 입장에서 정밀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상과제의 발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개선키로 확정된 과제는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개선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산업현장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구별해야 할 것은 삶의 질의 확보, 경제·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는 경제규제 완화의 대세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이다.

III. 행정제도개선의 주요내용

1. 농지·임야관련 규제의 합리화

가. 농지·임야취득 요건의 완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비농민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두고 있는 농지소유자격·소유상한·매매절차·통작거리·사전거주제한 등의 농지취득관련 규제를 개방화시대에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경자유전의 원칙내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농업진흥지역안의 자경농민에 대

행정제도 개선의 주요내용

- 농지·임야취득 요건의 완화
- 농지·산림전용제도 개선
- 기타 농지관리 규제 완화

하여는 농지소유 상한을 이전의 3ha에서 10ha까지로 대폭 확대(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 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20ha까지 소유 가능)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둘째, 민간업체가 농업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시험·연구·실습 시설을 설치하거나, 종묘 등 농업자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농지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셋째, 영농의사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사전거주 요건에 묶여 농지취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후계자나 농과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동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신규영농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종전에는 2,000㎡ 이상의 임야를 거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로 부터의 임야매매증명이 필요하였으나 금번에 10,000㎡ 이상의 임야거래시에만 매매증명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임야거래의 원활을 기하는 한편 소면적 임야매매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내의 농지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의 농지와 임야 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단일화하여 국민들의 농지거래에 따르는 불편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였다.

나. 농지·산림전용제도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지의 타목적 이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지의 보전 측면에만 매달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민원인들로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금번 행정제도개선에서는 농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농업적 이용과 비농업적 활용의 조화를 모색하며 농촌 주민의 토지이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고전용 면적을 확대하고 그 내역을 추가하는 한편, 전용권한도 지방자치 단체에 대폭 위임하여 농촌지역에 다양한 산업과 공공시설을 능동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확정된 농지·산림 전용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수산관련 연구시설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어업용시설을 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7,000㎡까지는 시장·군수에 게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신고전용 농가에 축산농가도 포함되도록 하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공장설치의 경우 시장·군수가 전용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1,500㎡에서 10,000㎡로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 공장설치에 따른 농지관련 민원이 시군 단위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셋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중소기업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과거에는 농지 편입비율이 70%이내 일 때에만 농지전용을 허가해 주던 것을 금번에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원활히 하였다.

넷째, 농지전용 업무체계를 검토한 결과, 전용허가 신청시 요구되는 첨부서류가 과다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처리기간이 늦어진다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전자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장 의견서 등 2종을 폐지하고 후자는 신청서 접수후 1주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국민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기로 하였다.

다섯째, 농지를 개량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기간 또한 농한기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농민들이 연중 필요로 하는 때에 읍면장이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해주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농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

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보전임지를 농지나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전용허가 범위를 1ha미만에서 10ha미만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전임지를 농업생산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축사·농산물가공 등 농어촌 소득증대사업과 정부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산림의 타용도 전용을 원활히 하였다.

그러나, 전용된 농지의 전용목적 이외의 사용과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기능은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 기타 농지관련규제 완화

현재 농지장기 임대차사업의 지원대상은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이농 희망농가의 농지로만 한정하였으나 금번에 이를 철폐하여 전농업의 영농규모 확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과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300㎡까지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농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담보법이 농지담보를 농업목적의 자금에 한정하여 농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법을 폐지하여 민법의 저당권 규정에 의해 농업목적이 아닌 자금을 빌릴때에도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後略)